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1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8. 29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## 1. 제안이유

관리·운영 조례 중 도동지구 시설물의 명칭을 변경하고,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상한액 산정 후 시행규칙에서 이용성, 관리성에 근거한 사용료를 명시하여 관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도동지구의 시설 명칭 변경(안 제3조제2호)

나. “서원스टे이”를 “숙박동(매난국죽)”으로 일괄변경

(안 제3조제2호, 안 제4조제6호, 안 제12조제1항, 제2항, 별표 1~4)

다. 시설사용료를 조례(안 별표 2)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을 명시(안 제8조제2항)

라. 공용시설물과 서원스टे이 명칭 변경(안 별표 1)

마. 도동지구 사용료 기준 변경(안 별표 2)

## 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, 제15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5. 7. 28. ~ 8. 17.)결과 : 의견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도동지구: 도동유교문화관 내 전시관, 숙박동(매난국죽), 사랑방, 서원 문화관, 휴게실, 관리사무실, 화장실 및 그 밖의 시설, 수목, 조형물

제4조제1호 중 “장 비”를 “장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“서원스테인”란”을 ““숙박동(매난국죽)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군수가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시설사용료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군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서원스테인”을 “숙박동(매난국죽)을”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“서원스테인 예약자”를 “숙박동(매난국죽) 예약자”로 “서원스테인”을 “숙박동(매난국죽)을”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 제2호 구분란 및 같은 호 나목 중 “서원스태이”를 각각 “숙박동(매난국죽)”으로 한다.

별표 4 제1호의 제목 “서원스태이”를 “숙박동(매난국죽)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(제7조 관련)

1. 화원지구

구 분		이용시간	휴관일	비 고
공연장	오전	9:00 ~ 12:00	없음	○좌석 258석 ○필요시 이용시간 조정, 휴관일 설정 가능
	오후	13:00 ~ 17:00		
	야간	18:00 ~ 22:00		
체험관		9:00 ~ 18:00		

\* “공연장”이란 화원지구 역사문화체험시설(지하1층) 내 공연, 강연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.

\* “체험관”이란 화원지구 역사문화체험시설(지하1층) 내 전시공간을 말한다.

2. 도동지구

구 분		이용시간	휴관일	비 고
공용시설물		10:00 ~ 17:00	매주 화요일	○필요시 이용시간, 휴관일 조정 가능
숙박동 (매난국죽)	입실	입실일 15:00 ~ 22:00		
	퇴실	퇴실일 11:00까지		

\* “공용시설물”이란 도동유교문화관 내 전시관, 사랑방, 서원문화관, 관리사무실, 화장실을 말한다.

\* “숙박동”이란 도동지구의 숙박시설을 말한다.

[별표 2]

시설사용료(제8조제2항 관련)

1. 화원지구

구 분	사용기준		사 용 료(원)	비 고
공연장	오전	9:00 ~ 12:00	50,000	시설 일부 사용 시 전부 사용 간주
	오후	13:00 ~ 17:00	65,000	
	야간	18:00 ~ 22:00	79,000	
	1일	9:00 ~ 22:00	135,000	

- 1)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 1회로 보고, 별도의 허가 대상으로 함.
- 2)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**30%**를 가산함.
- 3) 공연 연습 또는 무대설비,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**50%**로 함.
- 4)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**30%**를 가산함.

2. 도동지구

구 분			사 용 기 준	사 용 료(원)			비 고
시설명	면적(m <sup>2</sup> )	성수기 및 주말		비수기의 주중	기준인원		
숙박동 (매난국죽)	대나무	36	1박	300,000	200,000	2인	방 1개
	국화,매화	38		350,000	250,000	4인	방 2개
	난초	51		400,000	300,000	6인	
구 분	사용기준		사 용 료(원)		비 고		
부대 시설	사랑방	오전	9:00 ~ 12:00	50,000	시설 일부 사용 시 전부 사용 간주		
		오후	13:00 ~ 17:00	65,000			
		야간	18:00 ~ 22:00	79,000			
	서원문화관	1일	9:00 ~ 22:00	135,000			

○ 각종체험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그 수요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시설/프로그램 이용시간, 물가의 정도,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, 공익 및 군의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.

○ “성수기”란 1년 중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고, “비수기”란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.

○ “주말”이란 금요일,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(임시공휴일은 제외)의 전날을 말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설의 범위)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도동지구: <u>도동유교문화관, 서원문화관, 복합문화관, 서원스케이, 공동취사장, 린넨실, 숙직실 및 그 밖의 시설, 수목, 조형물</u></p>	<p>제3조(시설의범위) ----- ----- 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도동지구: <u>도동유교문화관 내 전시관, 숙박동(매난국죽), 사랑방, 서원문화관, 휴게실, 관리사무실, 화장실 및 그 밖의 시설, 수목, 조형물</u></p>
<p>제4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시설물”이란 제3조제1항 각 호 시설에 설치되거나 비치된 기기, <u>장비, 비품, 그 밖의 물건 등을</u> 말한다.</p> <p>6. “<u>서원스케이</u>”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동지구의 숙박시설을 말한다.</p>	<p>제4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</p> <p><u>장비,</u> ----- ---.</p> <p>6. “<u>숙박동(매난국죽)</u>”이란 ----- ----- -.</p>
<p>제8조(사용료의 징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르며, 시설사용료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8조(사용료의 징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군수가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별표 2 사용료 기준의 범위에서 시설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2조(매매·교환 등 금지)

① 서원스테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, 예약자는 그 예약 및 사용에 관한 지위를 임의로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·양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원스테이의 예약자의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는 예약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예약한 서원스테이를 이용할 수 있다.

[별표 3]  
시설사용료 감면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2. 시설사용료 감면기준

구분	감면대상	기준	감면요율	비고
서원스테이	장애인	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	사용료의 50% 할인	*비수기의 주중
	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	사용료의 30% 할인	
	국가보훈대상자	1~3급	사용료의 50% 할인	
		4~7급	사용료의 30% 할인	
	다자녀가정		사용료의 30% 할인	
달성군민		사용료의 30% 할인		
			사용료의 10% 할인	*성수기(주중, 주말 불문) 및 주말

가.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라 정한 시설사용료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2조(매매·교환 등 금지)

① 숙박동(매난국죽)을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숙박동(매난국죽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숙박동(매난국죽)을 -----  
--.

[별표 3]  
시설사용료 감면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2. 시설사용료 감면기준

구분	감면대상	기준	감면요율	비고
숙박동(매난국죽)	장애인	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	사용료의 50% 할인	*비수기의 주중
	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	사용료의 30% 할인	
	국가보훈대상자	1~3급	사용료의 50% 할인	
		4~7급	사용료의 30% 할인	
	다자녀가정		사용료의 30% 할인	
달성군민		사용료의 30% 할인		
			사용료의 10% 할인	*성수기(주중, 주말 불문) 및 주말

나. 감면대상자는 시설 이용 전에 서원스테인 관리·운영자에게 감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,

[별표 4]  
시설사용료 반환 기준(제10조제1항  
관련)

1. 서원스테인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  
숙박동(매난국죽) -----  
-----  
--,

[별표 4]  
시설사용료 반환 기준(제10조제1항  
관련)

1. 숙박동(매난국죽)

## 관 계 법 령

□ **지방자치법 제153조(사용료)**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□ **지방자치법 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**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